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2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강간)

피 고 인 이★★ (48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 사 오창훈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판 결 선 고 2011.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9. 09:4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놀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마▷▷(여, 18세)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동네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 피고인의 아들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혀로 가슴부위를 핥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감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소추요건에 대한 판단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형법 제306조에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만 18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유형을 제2유형으로 포섭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들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

 판사 추성엽 _____

 판사 조현락 _____